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제 정	:	2015. 2. 10.
개 정	:	2016. 2. 29.
개 정	:	2018. 3. 1.
개 정	:	2020. 6.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강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고사(면접·구술고사를 말한다)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5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③ 위원은 자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15.>

제4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종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
4.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체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당해 연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시행한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체영향평가의 결과 공시)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0. 6. 15.>

제9조(기타) 자체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